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5.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
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
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
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
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5
천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
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
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3.7퍼센트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2퍼센트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같은 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해당 통장이 제7조에 따라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된 후 1회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